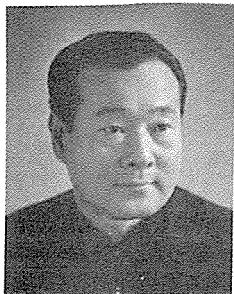


을바른 建築을 爲한 建築士法의 改定을 !



와우 아파-트 事件을 계기로 國會 建設委員會와 與黨 간사이 柳光鉉議員 外 23名이 提案한 建築士法中 改正案은 主로 22條 삭제 문제였으나, 이 22條야말로 建築士協會의 存廢가 달려있는 法中의 가장 중요한 法이어서 우리 士協은 물론 學會, 家協會, 會長과도 連席 상의한 후 三協會 會長이 모두 이 22條가 建築全般的인 進路에 必要한 重大法임에 비추어, 삭제가 아니라 더 한층 補強함으로서, 建築士의 向上과 國民에 신뢰받을 수 있는 大義名分을 認識코 22條뿐 아니라 其他 1, 2級 建築士 問題까지도 아울러 建議키로 合意되었던 일이 대한 건축학회 H. 理事 개인意思가 不法的으로 共和党 政策委員會에 22條 삭제 同意書를 提出케하여 또 다시 建築界에 不協和音을 일으키어, 수치를 자아내는 難境을 겪게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建築法의 15坪 以內 住宅의 標準設計図 問題도 住宅의 政策上의 問題에 白紙인 H理事의 20坪까지의 標準設計図 고집으로 우리 建築士 大部分의 業務量인 15坪 정도의 住宅設計를 빼앗기게 하는가하면 自身이 한번도 設計事務所 운영을 못한 사람이 우리들 建築士의 가장 重大한 法마저 말살하려 하니 建築界 여러분과 같이 분개해 마지 않는다.

먼저 柳光鉉의 원의 提案이유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는 建築設計를 할 수 있으며 위탁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建築士에 한하고 있으며 建築士의 자격은 건축물의 大小에 따라 1級 2級으로 區分하여 엄격한 국가고시에 합격된 者이므로 建築士의 자격을 소유한 者는 누구나 그 級數에 해당되는 建築物의 설계를 할 수 있고, 建築許可는 行政官署에서 그 設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設計図書를 建築士協會에 등록할 필요성이 없고 邑, 郡, 面에서 建築을 하려면 建築士協會支部 또는 分所가 있는 地方에까지 가서 登錄을 해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時間과 경제적 낭비가 크다하여 이 制度를 废止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會에서는 図書登錄制의 실시 방법이 協會에서의 단지 會費 징수를 위한 도움이 될 뿐 設計図書의 正確을 검토한다든지 안전도를 확인함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가 없는 法이 아닌가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支部에 따라서는 별씨부터도 설계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支部

도 있으나 全的으로 실시치 못한 거리낌을 느끼던 点으로서 참으로 좋은 点을 지적해 준 것을 감사 드려야 하겠다. 그러나 서울 특별시는 除外하고 부산직할시만 하더라도 市建築課長이 建築士가 아니며 其外 市, 郡, 面에서는 行政書記가 許可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위험하기 짹이 없다. 建築科를 卒業하고 設計하나 못해보고 建築士시험도 못본 建築科出身이 있는 官署는 또 좀 나은편이다. 이러한 점을 보강키 위하여 構造上의 安全度를 協會가 檢토함으로서 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都市計劃法, 建築法, 建築土法上의 여러가지 違法여부도 확인함으로서만 現時點의 行政當局에 직접 협력이 가능하며 無登録 設計士들의 영업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建築士들의 技術向上과 권익옹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不実無資格 사이비 建築士의 방지와 더불어 不實建築物이 없는 建築의 質的向上도 이려므로서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22條는 삭제되는 것 보다 改善 보강되어야 한다는 点을 強力히 主唱한다.

또 하나 重要한 일은 建築法에 감리業務가 늘므로서 부족한 建築士들의 막중한 업무량을 해결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人口 1億인 이웃 日本의 建築士의 數는 約 7萬名이 되므로 人口比로 보면 우리나라는 2萬3千名의 建築士는 保有되어야 日本과 같은 建設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 建築士協會 會員數는 全國 11個 支部와 36個 分所 全員의 數가 日本의 23분의 1도 못되는 950여명 밖에 안되어 그 950餘名도 1級, 2級으로 쪼개어 2級의 業務量은 極小範圍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형편에 監理까지 法上으로 實施되고 보니, 우선 2級 建築士의 業務量을 3배로 늘이고 2級에서 1級 시험을 대폭 완화하여 과목 합격제를 되살려 주는 建築士法 改正이 없이는 도저히 건설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現 時點에서의 올바른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點 아울러 改正 전의하는 바이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韓國建築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建築에서도 국가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建物을 지을 수 있고 建築士들이 나날이 向上될 수 있는 建築士法 改正이야말로 友邦에 앞선立法 發展이라는 點도 國會建設委員, 國會議員들과 같이 바람직한 一翼이 되지 않을까 한다.

會長 姜 明求